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7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장종태·김남희·김 윤

장철민 · 김선민 · 박정현

문진석 • 이해민 • 조승래

이병진 · 손명수 · 정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중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경로당에 보조된 보조금들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실정임.

이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

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경로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부식 구입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입비 등의 보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 곡관리법 | 에 따른 정부관리양 | ('양곡관리법 | 에 따른 정부 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입비-----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신 설></u>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 하여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 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u><신</u> 설>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 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 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경로당을 운 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

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 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 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경 로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에 따 른 부식 구입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